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5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유찬종이숙자 의원(2명)

찬 성 자 : 이창섭, 남창진, 이석주,
우미경, 우창윤, 김정태,
김기대, 박운기, 전철수,
김인제 의원(10명)

1. 제안이유

좋은빛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활성화 및 시민 불거리 제공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서울시 빛공해 사진 공모전 운영시 시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좋은빛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방식 변경 (안 제12조, 제15조)

- 부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나.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시간 완화 (안 제24조)

- 예술, 문화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완화

나. 좋은빛상 및 빛공해 사진 공모전 선정 및 시상 등 (안 제27조)

- 빛공해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게도 시상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1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제3항 중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40분 이내”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선정 및 시상 등)

-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와 빛공해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② 시상대상자에게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③~④ (생략)</p> <p>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제24조(점등 및 소등)</p> <p>① ~ ②(생략)</p> <p>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위</p>	<p>12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참석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p> <p>① (생략)</p> <p>② ----- ----- ----대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점등 및 소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40분 이내----- ----- -----</p>

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장식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를 선정하여 좋은빛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좋은빛상·빛공해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시상 등)

① -----
-----자와 빛공해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대상자에게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좋은빛상·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에서 기존의 좋은빛상 시상 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빛공해 공모전’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4,000천원(5년간)

- 5년간 84,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16,8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좋은빛상 시상금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빛공해 공모전 시상금	9,300	9,300	9,300	9,300	9,300	46,500
	소계(b)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 총 비용(b-a)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다. 전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련 방침서를 참조
- 좋은빛상 시상금은 ‘2016 서울좋은간판 공모전’ 사례를 준용함. 그밖에 상패, 메달 등은 현재 수여하고 있음

-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은 도시계획국의 사업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함
-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라. 좋은빛상 시상금(안 제27조)

- 연간 7,500천원

수상등급	시상금액	선정수			산출금액	계
		학술분야	설계분야	시공분야		
대상	300만원	1			300만원 × 1 = 300만원	7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1	1	1	100만원 × 3 = 300만원	
우수상	50만원	1	1	1	50만원 × 3 = 150만원	

마. 빛공해 공모전 시상금(안 제27조)

- 연간 9,300천원

수상등급	시상금액	선정수		산출금액	계
		사진	UCC		
대상	50만원	2		100만원 × 2 = 200만원	93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1	1	50만원 × 2 = 100만원	
우수상	20만원	1	2	30만원 × 3 = 90만원	
장려상	10만원	25	2	20만원 × 27 = 540만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